

상장사·중소기업의 투명회계·적법세금·성공경영 정보



#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 공인회계사 조세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중기업  
경영관리  
인주화

2025/ 7/ 16 통권 1736호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상법 개정(안)에 대한 G20/OECD관점의 답론(1)
- 자금거래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는 이자징수명세서 등이 지출증빙임
- 부가가치세 신고, 국세청이 소상공인 어려움 극복을 지원합니다.
- '25.6월 한국회계기준원 신속 질의회신 요약 등 공개

####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문자메세지나 카카오톡을 통한 이자배당 지급내역 등을 통보하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인정됨 (p.13)

###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 戰略

#### 〈부모사망전 증여의 의미와 장단점〉

개념구분	의미, 효과, 장점, 계산비교 등
10년 단위 구분	증여재산은 10년 단위 합산으로 구분하면, 10년마다 낮은 세율(10%~20%) 여러번 적용 사전증여 없으면 향후 사망시 일괄합산되어 높은 증여세율 적용
낮은 시가 적용	일찍 증여할 수록 물가상승 대비 낮은 평가액으로 계산되어 낮은세율 적용가능함
가족재산 순환	부모 재산이 일찍 자녀에게 전달되어, 자녀의 사업자금과 주택취득 등 가능
이익금액 전달	일찍 증여된 자산의 이자·임대료 등의 향후 이익에는 증여세가 없음
수명연장 순환	한국인 평균 수명연장에 대응하여 선증여 통한 세대간 경제순환 촉진
향후 양도세 감소	선증여재산 양도시 증액된 증여가액이 취득원가가 되므로 양도소득세 감소됨
창업자금증여	창업자금증여액(50억원 까지) - 5억원 차감 후 낮은세율 10%만 적용(조특법 제30조의5)
기업승계증여	기업주식 자산평가액 - 10억원 차감 후 낮은세율 10%만 적용(조특법 제30조의6)
생활력 영향	너무 일찍 증여하면 자녀의 독립생활의 지지에 반대작용(나쁜 영향)
승계재산 훼손	자녀의 재산관리 능력 부재시 탕진 가능성 있음(60대에 증여)
상속재산 합산	창업자금증여와 기업승계증여재산은 최종상속재산에 합산과세

(안세회계법인 대표이사 박윤중공인회계사 작성)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 (AnSe consulting)  
경영관리·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 주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736호 / 주간 29호

2025. 7. 16. (수)

· 발행인: 이윤선  
· 제작: (주)안건조세정보  
· 대표전화: (02) 829-7575  
· FAX: (02) 718-8565

## 목 차

-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02) 829 - 7575  
팩스: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051) 642 - 3988  
팩스: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053) 654 - 9761  
팩스: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010) 3409 - 2427  
팩스: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010) 5255 - 6116

-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 eAnSe.com의 차별화특장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부모 사망 전 증여의 의미와 장·단점	표지
CEO의 경영산책	상법 개정(안)에 대한 G20/OECD관점의 담론(1)	2
세무·회계상담자문 (남들은무슨고민할까?)	- 법인의 해외출장소 설치 및 사용에 대한 법인의 비용처리에 관한 문의 - 고용중대세액공제 해당 여부 - 대표이사 퇴직금 관련 문의	5 6
눈에 맞는 절세미인	자금거래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는 이자징수명세서 등이 지출증빙임	7
매일 절세재무요점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요 - 상속세 과세자 비용 추이	9 10
직장인 Survival	자존감 vs 자기효능감, 뭐가 다를까?	11
최신 판례예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의미함 (기준법규소득-54, 2024.08.14) -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시 임차인이 다른 1년 이하의 2개의 임대차 계약(1년, 6개월)을 순차적으로 체결한 경우, 두 임대차계약의 임대 기간을 합산하여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서면법규재산-1062, 2024.11.18)	12 13
세정 뉴스와 해설	내년 최저임금, '1만210원~1만440원' 사이... 10일 전원회의서 결정	14
마케팅 Tax consulting	문자메세지나 카카오톡을 통한 이자·배당 지급내역 등을 통보하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인정됨	13
세무정보	- 부가가치세 신고, 국세청이 소상공인 어려움 극복을 지원합니다.	15
회계정보	- '25.6월 한국회계기준원 신속 질의회신 요약 등 공개	30
세무환율정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29

# 상법 개정(안)에 대한 G20/OECD관점의 담론(1)



이재권 안세회계법인 지속가능경영자문센터장  
공인회계사, 경영학박사, CIA

한국윤리경영학회 산학협력 부회장 (현), 서강대 내부감사전문과정 교육운영위원  
서울시립대, 국립 한밭대 겸임교수, 한국회계정보학회 부회장  
한국경영교육학회 산학협력 부회장,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민관협의회 공정신뢰분과위원장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ERS( Enterprise Risk Services) 부대표  
한국공인회계사회 정보기술연구위원장  
Touche Ross Australia, Melbourne : Advanced Technology Group 근무

## ● 배경

최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 전체’로 확대하고, 주주권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상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배구조 개선과 자본시장 신뢰 제고에 기여할 수 있지만, 경영진의 법적 책임 확대에 따른 소송 리스크 증가와 비용 부담, 경영 판단 위축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기업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비상장 중소기업까지 대상으로 하는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여 상장사에 한해 주주보호 의무를 강화하고 사외이사 전문성을 제고하자는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미국 및 영국 등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에서는 우수한 기업지배구조가 기업 경쟁력의 원천이며, 각국 경제 장기적 안정성장의 기본 요건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왔다. 특히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모범적인 기업지배구조는 투자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 기업이 장기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고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 이재권 강기승 박성환, 21세기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경영의 핵심 :GRC 이해, 신영사, 2025. 3, p.135.

자본시장 선진화와 기업 경영 안정이라는 두 과제를 함께 달성하기 위한 정교한 법 제정과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위와 관점에서 정책설계와 담론에 도움을 주기 위해 최근 2025년 OECD에서 발표한 G20/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의 이행평가 방법론을 살펴보기로 한다.

## ● G20/OECD 기업지배구조 이행평가 방법론

\* OECD(2025), Methodology for Assess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G20/OECD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2025,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80996ea9-en>, pp.3-5. 분석 요약 인용함.

G20/OECD 기업 지배구조 원칙은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주요 국제 표준이다. 2023년 6월 OECD 각료이사회에서 채택하고 2023년 9월 G20 회원국의 승인을 받았다. OECD 기업지배구조 위원회(OECD Corporate Governance Committee)는 원칙의 이행을 지원하는데 관심을 두고 있다. 금융안정위원회(FSB)에서 채택한 건전한 금융 시스템을 위한 주요 기준 중 하나인 이 원칙은 전 세계적으로 시장 신뢰와 무결성, 경제 효율성, 지속 가능한 성장, 금융 안정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 지배구조의 법적, 규제 및 제도적 프레임워크를 개선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인정받고 있다. 위원회는 각 국가의 기업지배구조 원칙 이행을 평가하고 장려하기 위해 G20/OECD 기업지배구조원칙 이행평가를 위한 방법론(Methodology for Assessing the Implementation of G20/OECD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을 발표하였다. 원칙과 방법론은 각 국가의 자발적인 자체 평가뿐만 아니라 OECD 가입을 원하는 국가를 포함한 OECD 기업 지배구조 평가의 기초를 형성한다. 본 평가방법론은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의 표준 및 규범 준수 검토(Review of Observance of Standards and Codes, ROSC) 및 금융 부문 평가 프로그램(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me, FSAP)에서 활용된 기업지배구조 평가로부터 나온 의견이 반영되었다. 본 평가방법론은 우선순위에 의해 선정된 기업지배구조의 기초한 특정 부문에 대한 검토(예 : 주주의 권리 보호)를 지원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G20/OECD 기업 지배구조원칙 이행평가 방법론(2025)의 업데이트는 2023년 개정된 G20/OECD 기업 지배구조 원칙에 따른 것이다. G20/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은 건전한 금융 시스템을 위한 주요 기준으로 금융안정위원회에 의해 지정되었다. 본 방법론은 원칙의 이행을 평가하는 방법을 설명함으로써 원칙을 뒷받침한다. 방법론은 국가내 G20/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의 이행에 대한 평가를 뒷받침하고 정책 논의를 위한 틀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새로운 원칙이나 다른 기준을 만들지 않는다. 평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업 지배구조에서 특정 강점과 약점의 성격과 정도를 식별하고, 이를 통해 기업 지배구조와 경제 성과의 향상으로 이어지는 개혁 우선순위를 식별할 수 있는 정책 대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원칙은 부분적으로 회사법, 증권 규제 및 집행/법 체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방법론에서는 국가가 아닌 "관할권"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G20/OECD 기업 지배구조 원칙이행평가 방법론(2025)의 목차를 보면 다음과 같다.

## A. 방법론적 문제 및 절차

방법론의 사용 및 범위

결과 평가 방법

구현 및 시행

검토자와 평가 프로세스

방법론의 구조

정책 옵션 및 권장 사항 형성

## B. 기업 지배구조 환경

경제 및 자본 시장 개요

자본 시장 기능 및 시장 구조

소유와 통제의 구조

법적 및 규제 프레임워크

## C. 원칙

제1장 효과적인 기업 지배구조 프레임워크의 기초 보장 이슈 및 평가 기준

제2장: 주주의 권리와 공평한 대우 및 주요 소유권의 기능 이슈 및 평가 기준

제3장: 기관 투자자, 주식 시장 및 기타 중개인 이슈 및 평가 기준

제4장: 공개와 투명성 이슈 및 평가 기준

제5장: 이사회 책임 이슈 및 평가 기준

제6장: 지속 가능성과 회복력 이슈 및 평가 기준

## 법인의 해외출장소 설치 및 사용에 대한 법인의 비용처리에 관한 문의

Q

해외 출장소 설치 및 사용을 목적으로,

1. 영주권이 있는 대표이사가 해외에 개인명의로 부동산(출장소로 사용할)을 구매 후, 국내 법인이 법인통장으로 출장소 사용 명목으로 대표자에게 법인통장에서 출장소임차료를 지급한 경우, 임차료에 대한 법인비용처리 가능여부를 문의드립니다.
2. 출장소를 영주권이 있는 법인대표자가 구매할 때, 법인통장의 금액을 송금하여, 그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법인의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A

1. 법인명의로 해외 부동산을 구매 및 임차할 수 없는 경우로서 부득이하게 대표 명의로 구매 후 법인이 사용하여 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법인의 비용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지만, 법인이 자신들의 명의로 구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라면 법인 비용처리가 애매하다고 판단됩니다.
2. 실제로는 법인이 구매하는 것이나, 법인명의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 대표자가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라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법인비용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고용증대세액공제 해당 여부

Q

제조업을 운영하시던 부친이 폐업하고 아들이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친이 운영하던 사업장에 근무하던 직원 전부를 아들 사업장에서 채용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신규 사업자등록을 한 아들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A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종전에 비해 증가된 인원이 없다면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대표이사 퇴직금 관련 문의

**Q** 2015년에 대표이사 퇴직금 중간정산을 연봉제 전환 조건으로 받았습니다. 최근에 다시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아도 퇴사시 퇴직금을 받아갈수 있다고 컨설팅 받았다고했는데 맞는건가요? 그렇다면요건이 무엇일까요?

**A**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였다더라도,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경우는 다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유권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1626, 2017.06.22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경우,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함에 따라 지출하는 부담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3항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되 퇴직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임원의 퇴직급여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함에 따라 지출하는 부담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4항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법인이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정관의 위임규정이 없이 이사회결의로 정한 퇴직급여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 자금거래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는 이자징수명세서 등이 지출증빙임

상담실 백종훈 차장

법인은 지출하는 모든 비용에 대해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을 입수하여야 하며, 특히 3 만원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서는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등의 법정증빙영수증을 입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회사가 설비확충이나 운영을 위해 금융기관이나 또는 다른 기업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해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지출과 관련된 증빙을 입수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 금융기관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자징수명세서 등이 지출증빙이 됨

이자를 지급하는 거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가 아니므로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때에는 이자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였다 는 표시인 원천징수영수증이 증빙이 된다.

하지만 은행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뒤 지급하는 이자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의무가 없으므로, 은행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뒤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이자액의 전액을 지급하게 되므로 원천징수영수증도 구비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금융기관 등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출거래장상의 이자납부내역 또는 은행의 이자징수명세서 등을 지출증빙으로 첨부하여 처리하면 된다.

그러나 금융기관이더라도 영업인가가 취소되거나 파산으로 인해 설립된 파산재단은 법인세법상의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 법인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반드시 하여야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증빙을 하여야 한다.

### ♣ 서일-872, 2007.06.25

영업인가가 취소되었거나 파산으로 설립된 파산재단은 「법인세법 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 17826호로 개정 후의 것) 제111조 제2항에 규정된 금융보험업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파산재단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파산재단을 법인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국내의 금융기관이 아닌 해외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뒤 지급하게 되는 이자비용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이자를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따라서 해당 해외국가와의 조세조약이나 국내세법(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고,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을 지출증빙으로 처리하면 된다.

♣ 서이46017-11558(2002.8.23.)

내국법인이 일본은행(일본의 중앙은행 및 일본정부·중앙은행 또는 양자에 의하여 전적으로 소유되는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않음) 본점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이에 대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동 일본은행 국내지점이 당해 차입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우 동 일본은행 본점이 수취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한·일조세협약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총액의 10%(주민세 포함)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원천징수영수증

타인이나 관계사 등에서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하는 이자비용에 대하여 비용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의하여 적정한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또한 반드시 원천징수를 해야 비용(=손금)인정이 가능하다.

이때의 지급이자에는 거래 상대방이 금융업을 주업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원천징수세율 25%를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한다.

따라서 해당 증빙으로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나 차용증 및 보통예금 통장사본 등을 비치하고 이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관하면 된다.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요

소득	• ISA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및 분리과세 대상으로, 종합과세 대상에서 배제
납입한도	• 연2000만원(한도 미달액은 다음해로 이연 가능), 총 1억원 납입
세제혜택	• 계좌 내 운용되는 상품들 순손익에 과세 • 금액 인출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돼 세금으로 재투자 가능
의무가입기간	• 3년
세금	• 비과세 - 200만원(서민형 400만원) • 분리과세 - 초과금액 9.9% 원천징수 종결 • 세액공제 - 만기자금은 연금계좌에 납입 시 연말정산 때 추가로 가능(최대 300만원)
주의	• 만19세 이상 계좌 개설 가능(근로소득 있을 시 만 15세부터 가능) • 계좌개설 및 만기 연장 시점 기준 직전 3개 연도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일 경우 가입 불가



### 4대은행, 주요 정기예금 만기별 금리

은행	상품명	1개월	6개월	1년
KB국민은행	KB Star 정기예금	3.00	3.50	3.50
신한은행	솔편한 정기예금	3.00	3.45	3.47
하나은행	하나의정기예금	3.00	3.45	3.45
우리은행	WON플러스예금	3.00	3.47	3.52



## 상속세 과세자 비율 추이

구분	전국			서울		
	대상자	결정 인원	과세자 비율	대상자	결정 인원	과세자 비율
2005년	22만7004명	1816명	0.80%			
2010년	32만5045명	4546명	1.40%	5만7945명	1653명	2.85%
2015년	32만4349명	6592명	2.03%	5만1673명	2066명	4.00%
2018년	35만6109명	8002명	2.25%	5만5596명	3127명	5.62%
2019년	34만5290명	8357명	2.42%	4만9521명	3251명	6.56%
2020년	35만1648명	1만181명	2.90%	5만184명	3760명	7.49%
2021년	34만4184명	1만2749명	3.70%	4만7924명	4803명	10.02%
2022년	34만8159명	1만5760명	4.53%	4만3734명	6106명	13.96%
2023년	29만2545명	1만9944명	6.82%	4만9838명	7475명	15.00%
2024년	35만8979명	2만1193명	5.90%	5만23명	7732명	15.46%



## 연도별 사망자 대비 상속세 과세대상 추이

구분	전국			서울		
	사망자	상속세 과세대상	과세자 비율	사망자	상속세 과세대상	과세자 비율
2018년	29만8820명	8002명	2.68%	4만5219명	3127명	6.92%
2019년	29만5110명	8357명	2.83%	4만3829명	3251명	7.42%
2020년	30만4948명	1만181명	3.34%	4만5522명	3760명	8.26%
2021년	31만7680명	1만2749명	4.01%	4만8798명	4803명	9.84%
2022년	37만2939명	1만5760명	4.23%	5만5296명	6106명	11.04%
2023년	35만2511명	1만9944명	5.66%	5만1446명	7475명	14.53%
2024년	35만8400명	2만1193명	5.91%	5만2700명	7732명	14.67%



## 자존감 vs 자기효능감, 뭐가 다를까?

### 1. 자존감은 '존재에 대한 믿음', 자기효능감은 '능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자존감은 '나는 존재 자체로 소중하다'는 느낌이고, 자기효능감은 '나는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는 존재의 가치를, 다른 하나는 행동의 가능성을 말해요.

### 2. 자존감은 비교하지 않지만, 자기효능감은 경험에 기반합니다

자존감은 비교나 성과와 무관하게 자신을 긍정하는 태도입니다. 반면 자기효능감은 과거의 성공 경험, 피드백, 실전 훈련 등을 통해 쌓이는 실질적인 확신입니다.

### 3. 자존감이 기반이 되어야 자기효능감이 잘 자랍니다

자존감이 낮으면 도전할 용기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효능감을 쌓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자존감이 높아도 실행 경험이 부족하면 자기효능감은 낮을 수 있어요. 둘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 4. 자존감은 흔들릴 수 있지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기효능감은 특정 상황이나 실패에 따라 쉽게 변할 수 있지만, 자존감은 더 깊은 층위에 있는 감정이기 때문에 한두 번의 좌절로는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위기 상황일수록 자존감이 더 중요하죠.

### 5. 자기효능감은 쌓고, 자존감은 돌보는 것

효능감은 행동과 성과를 통해 '쌓아야' 하고, 자존감은 자기이해와 수용을 통해 '돌보아야' 합니다. 두 가지를 균형 있게 가꾸는 것이 건강한 자기계발의 핵심입니다.

# 최신 판례 예규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의미함

기준법규소득-54, 2024.08.14

## 질 의

-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 위 급여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한 것이라면 월 20만원 한도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함 (소득법 12 머.)

## 질의

- 비과세 보육급여의 기준이 되는 "6세 이하"의 의미

## 회 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31, 2024.08.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31, 2024.08.12.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의미합니다.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추가공제 금액 계산시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에는 2021.7.1. 이후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에 대한 투자분만 포함됨

서면법규법인-3395, 2024.11.05

## 질 의

- 질의법인은 첨단소재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21년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라 이차전지 소재 시설에 대해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로 인정받았음
  - \* '21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신설('21.12.28. 법률 제18634호) (부칙) '21.7.1. 이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

- 질의법인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로 인정받은 시설과 동일한 성격의 이차전지 소재 시설에 대해 2021년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왔음

## 질의

-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로 인정받은 시설과 동일한 성격의 시설에 대한 개정 전의 투자금액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2호나목의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추가공제 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6의2]에서

규정하는 시설로서 2021.7.1. 이후 연구개발세액 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에 대한 투자분만 포함되는 것임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시 임차인이 다른 1년 이하의 2개의 임대차계약(1년, 6개월)을 순차적으로 체결한 경우, 두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서면법규재산-1062, 2024.11.18

#### ■ 질 의

-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시 임차인의 요청으로 임대기간 1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다른 임차인과 6개월의 임대차계약을 순차적으로 체결한 경우, 두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1년+6개월)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회 신

임차인의 요청에 의하여 체결한 임대기간 1년의 1차 임대차계약과 이와 별도로 임대기간 6개월의 2차 임대차계약을 서로 다른 임차인과 순차적으로 체결하는 경우, 두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제1항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 Marketing Tax consulting

문자메세지나 카카오톡을 통한 이자·배당 지급 내역 등을 통보하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인정됨

**금융회사 등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을 통한 모바일 보안문서로 통보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93조제3항제2호에 따른 통보에 포함되는 것임**

서면법규소득-3659, 2024.11.20

#### ■ 질 의

- 질의법인은 『소득세법』제1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3조에 의거 현재 우편으로 고객들에게 금융소득에 대한 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발급을 의제하고 있음
  - 한편, 질의법인은 고객들 중 다수가 우편을 통한 자료 통보를 불편해함에 따라 휴대폰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을 통한 보안문서로 통보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개발을 검토중에 있음

#### 질의

-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을 통한 모바일 보안문서로 통보하는 경우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93조제3항제2호에 따른 통보에 포함되는지 여부

#### ■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금융회사 등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그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을 통한 모바일 보안문서로 통보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93조제3항제2호에 따른 통보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 내년 최저임금, '1만210원~1만440원' 사이... 10일 전원회의서 결정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210원과 1만440원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9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위원들은 노사간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감정만 격해지자 결국 회의 를 마무리하고 추후 한차례 더 열기로 했다.

전날 오후 3시 시작된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8차 수정안까지 제시하며 간격을 720원까지 좁혔으나 더이상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구간으로 1만210 원(1.8% 인상)~1만440원(4.1% 인상) 사이를 제시했다.

심의 촉진구간 하한선인 1만210원은 올해 최저임금(1 만30원) 대비 1.8% 오른 것으로, 2025년 소비자물가상승 률 전망치를 반영한 것이라고 공익위원들은 설명했다.

상한선으로 제시한 1만440원은 올해 대비 4.1% 인상안 으로, 2025년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인 2.2%와 2022~2024년 누적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최저임금 인상 률의 차이인 1.9%를 더한 것이라고 밝혔다.

심의 촉진구간이 제시되면 노사는 이 구간 내에서 수정 안을 제시해야 하나 예상보다 낮은 인상률에 노동계가 철 회를 요구하며 반발했다.

올해는 심의 촉진구간의 상한으로 인상률이 결정된다 고 해도 4.1%에 머문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새롭게 출 발한 노동존중을 외치는 새 정부에서 공익위원이 제출한 최저임금 수준에 분노한다"며 "제시한 촉진구간을 철회할 것 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고시 기한은 8월 5일이다.

### 고용보험 가입기준 '근로시간→소득' 개편... "취약근로자도 가입"

고용 형태 변화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사각지 대에 놓인 취약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근로 시간에서 소득으로 개편한다.

고용노동부는 7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995년 고용보험 시행 이후 30년간 유 지해 온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이 근로 시간에서 소 득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근로 시간과 관계 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 득을 올리는 노동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 만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일정한 근로 시간을 산정하기 어렵거나 여러 일자리에서 초단기로 일하는 노동자들의 가입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복수 일자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각 각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합산한 소득이 소득 기준을 넘는 경우 근로자 신청에 따라 고용보 험에 가입할 수 있다.

노동부는 적용기준이 되는 구체적인 소득액은 노·사· 전문가의 논의를 거쳐 시행령에서 정할 계획이다.

적용기준이 소득으로 바뀔 경우 국세 소득자료에 대한 전산 조회만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가입 노력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적용기준 변경으로 "고용보험의 보호가 꼭 필 요한 취약 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 라고 기대했다.

이 입법예고는 2023년 3월부터 노·사·전문가가 11차례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국세 소득신고로 대체할 수 있는 고용보험 신고는 폐지 또는 간소화하고 고용보험 행정을 통해 구축된 실시간 소득자료를 각종 일자리 사업 지원 대 상 발굴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향후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의 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권장준 노동부 차관은 개정안에 대해 "고용보험이 앞으 로 모든 일하는 사람의 보편적인 고용 안전망으로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 부가가치세 신고, 국세청이 소상공인 어려움 극복을 지원합니다.

- 국세청, 2025. 7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는 2025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7월 25일(금)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번 신고대상자는 전년 동기(671만 명) 대비 8만 명 증가한 679만 명으로서, 개인 일반과세자는 3만 명 증가한 546만 명, 법인사업자는 5만 개 증가한 133만 개 입니다.
  - 상반기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28만 명)는 6개월 간 실적을 반드시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 그 외 간이과세자 중 예정부과대상자\* 7만 명은 국세청이 고지한 세액을 7월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예정부과대상자의 상반기 사업실적이 직전연도 대비 1/3에 미달한 경우에는 실제 사업실적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직전 과세기간('24.1.1. ~ 12.31.)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고지(50만 원 미만 제외)

\*\* 예정부과대상 사업자가 사업부진으로 신고한 경우 예정부과세액은 취소

### | 신고대상 과세기간 |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25. 1. 1. ~ '25. 6. 30.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	'25. 1. 1. ~ '25. 6. 30.
법인사업자	예정고지 대상*	'25. 1. 1. ~ '25. 6. 30.
	예정고지 미 대상	'25. 4. 1. ~ '25. 6. 30.

\*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 국세청은 사업자의 실수를 사전에 예방하고 성실신고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신고도움서비스'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왔습니다.
  - 사업자가 매출을 적게 신고하거나 세액공제를 과다하게 신청하는 등의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도움자료를 전년 대비 대폭 확대한 370만 명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 \* ('24년 1기 확정) 104종 124만 명 → ('25년 1기 확정) 131종 370만 명(+246만 명, 198% ↑)
    - 특히, 이번 신고에는 재활용폐자원 등 세액공제 요건 및 주요 유의사항 안내, 수입물



품 오픈마켓 판매자 및 명품 리셀러, 개인후원금을 지급받은 크리에이터 등이 매출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새롭게 성실신고도움자료에 추가하였습니다.

-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서 작성 시 실수를 줄이고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 등 과세기 반자료를 신고서에 미리 채워 제공(총 28종)하고 있습니다.

\*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ARS(☎1544-9944)로도 신고 가능

- 아울러, 이번 신고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액을 신고서에 자동으로 채워주고,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월세 등 임대내역 입력 시 신고서에 자동반영하는 등 홈택스 신고편의를 개선하였습니다.

### ▣ 홈택스 전자신고 개선 주요 내용 ▣

-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액을 신고서에 자동으로 채워주는 방식으로 개선(134만명)
- 2 부동산임대업(131만명) 신고 시 월세 등 임대내역을 작성하면 신고서에 자동 반영
- 3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신고 시 실수를 최소화하도록 사망자 등 불공제대상 팝업 안내
- 4 각종 매출·매입, 예정고지세액 등을 한꺼번에 조회하는 '신고자료통합조회' 시 편리한 출력기능 신규 제공

- 이번 신고 시 국세청은 소상공인·중소기업 및 수출기업 등의 어려움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참고5】

-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의 자금유동성 지원을 위해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자의 납부기한을 사업자 신청없이 직권으로 2개월(9.25.까지) 연장합니다.

- 직권연장 대상자는 ①건설·제조업 및 음식·숙박·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전년 대비 매출액이 크게 감소한 사업자\*(40만 명)와, ②수출기업 세정지원대상자로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자(1.8만 명)입니다.

\* '24.2기 귀속(7.1.~12.31.)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

- ③간이과세자 예정부과대상자 및 예정신고자 중 음식·숙박·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14.5만 명)의 예정부과(신고)세액 납부기한을 9월 25일까지 직권연장 합니다.

- 그 밖의 사업자가 경영상 어려움 등의 사유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법에 정해진 기한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 또한, 통상환경 변화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출기업을 비롯한 세정지원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환급을 신청(첨부서류 포함)하는 경우 신속하게 지급\*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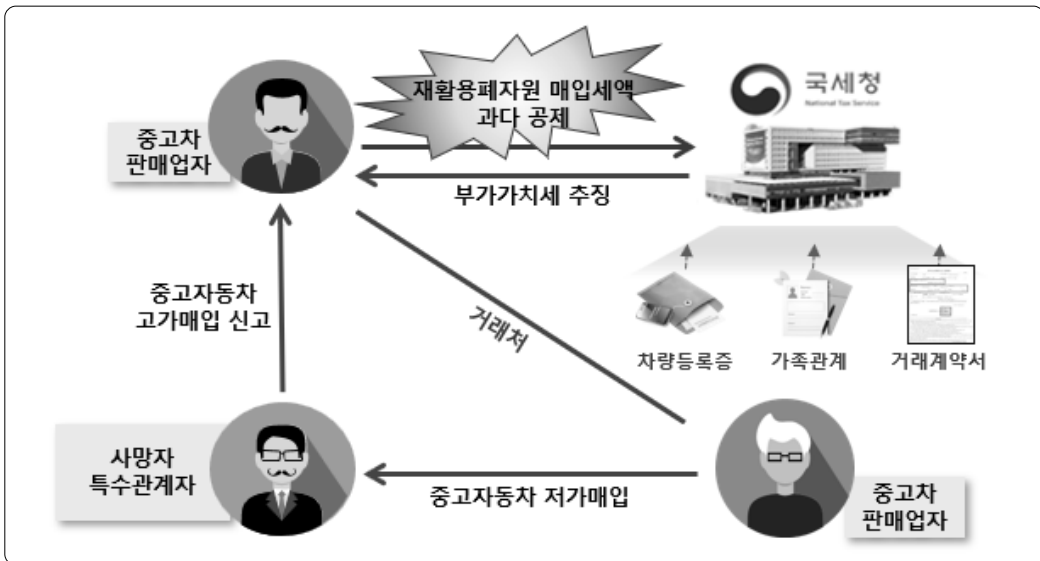
\* 조기환급은 5일 앞당겨 8월 4일(월), 일반환급은 11일 앞당겨 8월 14일(목)까지 지급

부가가치세 신고,  
국세청이 소상공인 어려움 극복을 지원합니다.

- 앞으로도 더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도움자료는 최대한 제공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고편의를 제고하는 등 적극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니,
- 사업자께서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임을 인식하고 국세청이 제공해 드린 신고도움자료를 반영하여 성실하게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참고 1 신고도움자료 신규 안내 사례

### 사례 1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사망자 명의를 도용하여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과다공제 받은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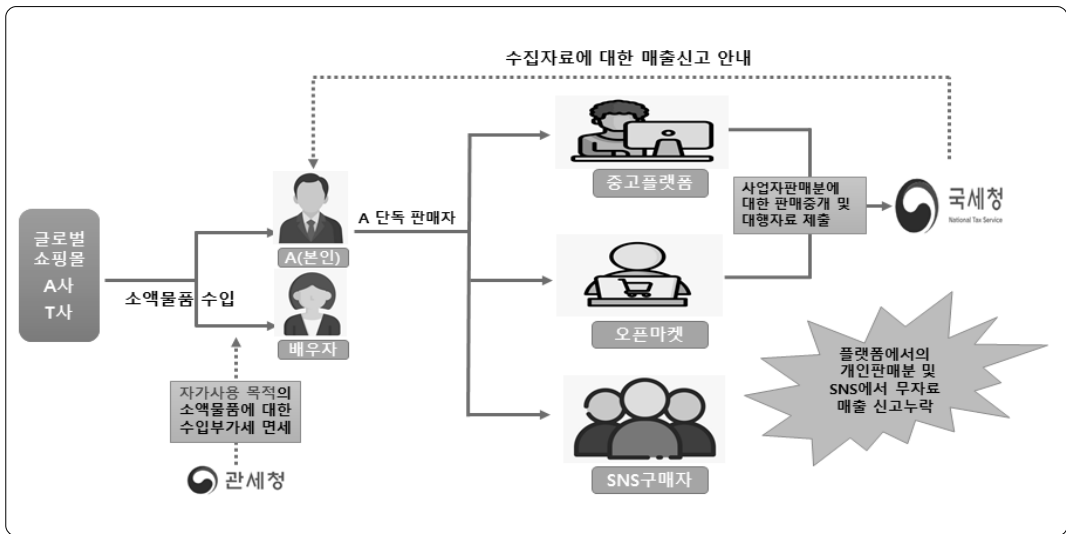


- 사실관계 및 확인결과
  -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또는 중고자동차를 취득한 경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공제 신고
  - \* 개인, 비사업자, 비영리단체, 면세사업자 등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 A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관련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사망자·특수관계자 명의를 도용하여 매입금액을 허위로 과다신고한 것을 확인하여 과다 공제 매입세액 000백만원 추징
- 올바른 신고방법
  -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차량등록증, 거래계약서 등 확

인하여 거래상대방 인적사항, 금액, 차량번호, 차대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함

\* 차량고유 식별번호로 차량등록증에 차대번호 또는 차량식별번호 항목으로 기재되어 있음

## 사례 2 수입제품을 라벨 교체하여 오픈마켓 등에서 판매하고 신고 누락하여 VAT 탈루 사례



### □ 사실관계 및 확인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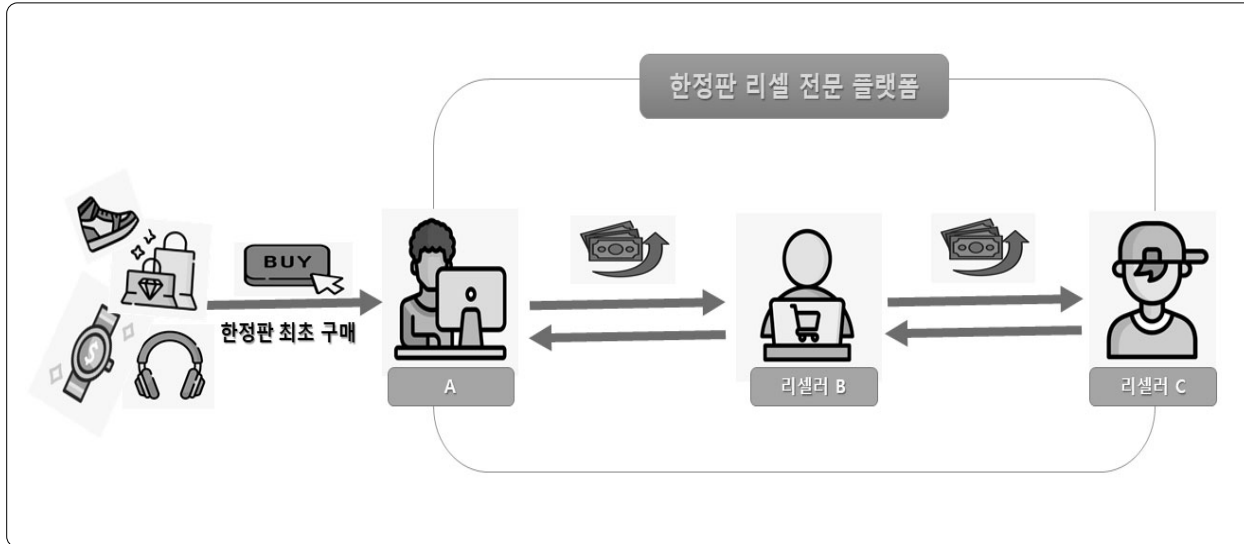
-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개인 A는 본인과 가정주부인 배우자 명의로 ▲▲, ■■ 등 해외 쇼핑몰에서 000건의 소액물품을 대량 수입하면서
  -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부가세를 면제받아 저렴하게 수입한 제품을 라벨 같이 작업 후에 SNS·오픈마켓 등에서 판매함
  - 오픈마켓 등 플랫폼이 국세청에 제출하는 매출자료에 대한 수입만 신고하고 SNS 등에서의 판매실적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00백만원 탈루

### □ 올바른 신고 방법

- 오픈마켓 등 플랫폼은 사업자의 매출내역 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아닌 개인 판매자에 대한 매출자료도 국세청에 제출하고 있음(부가가치세법 제75조)
  -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한 해외제품을 플랫폼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개인 회원의 판매실적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실제 매출내역에 따라 성실신고 하여야 함

사례 3

한정판 운동화 및 명품 등을 리셀(재판매)하면서 사업자등록 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한 판매자의 VAT 탈루 사례



□ 사실관계 및 확인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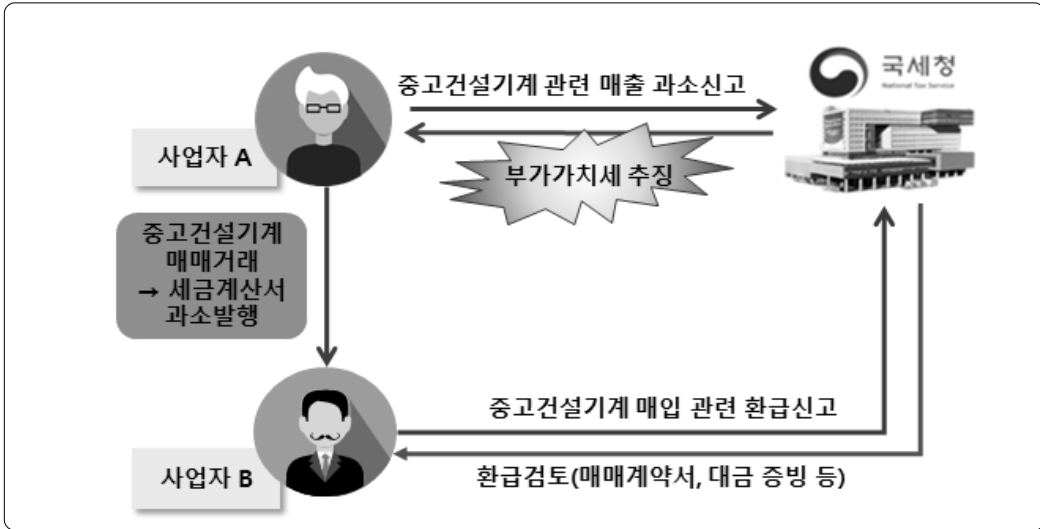
- A는 한정 출시한 운동화 및 명품 등을 쇼핑몰에서 구매한 다음, 리셀\* 플랫폼에서 10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되팔아 차익을 얻는 등
  - \* 리셀(Re-sell) : 한정판이나 명품 등 희소성 있는 제품을 구매한 후 그 가치가 증가하면 다시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행위
- 한정판 제품 구매와 판매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000백만원의 차익을 얻었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등 무신고

□ 올바른 신고 방법

- 플랫폼은 부가가치세법 제75조에 따라 국세청에 판매대행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며, 플랫폼으로부터 수집된 자료는 과세자료로 활용
- 플랫폼에서 계속·반복적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영리 목적과 무관하게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 한정판 고가제품 등을 계속·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거래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발생함

사례 4

중고건설기계 매매 시 실거래가 보다 낮은 금액(장부가액)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매출 누락한 사례



□ 사실관계 및 확인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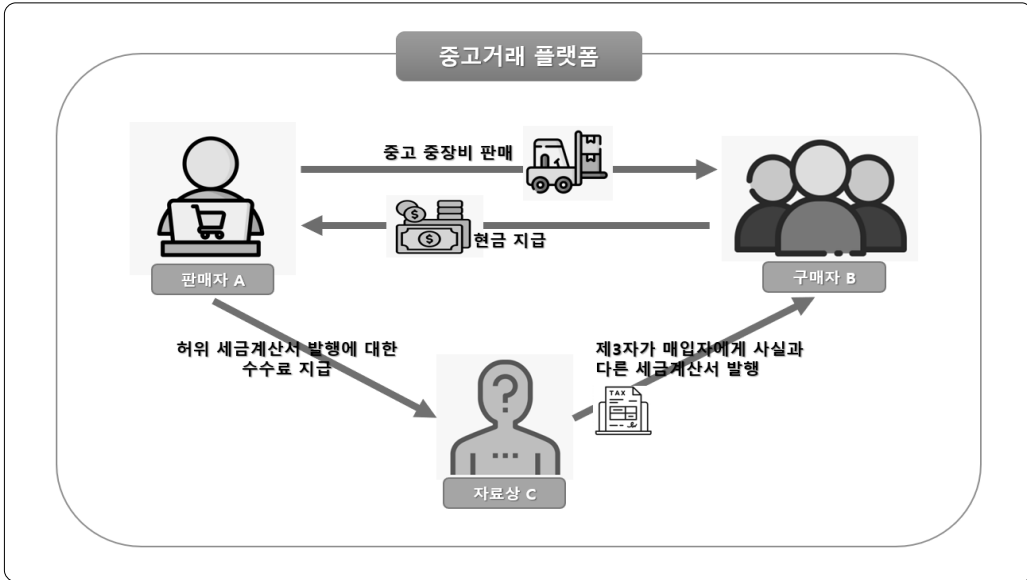
- 건설장비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A는 본인의 사업에 사용하던 건설기계를 건설장비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B에게 000백만원에 양도하며 실거래가 보다 낮은 장부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과소 발행하였음
- 사업자 B가 중고건설기계 매입 관련하여 부가세 환급 신고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였고 환급 검토과정에서 실거래가액이 확인됨
  - 이에 사업자 A가 중고건설기계 관련하여 부가세 신고시 매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부가세 00백만원 추징

□ 올바른 신고 방법

- 중고건설기계 매매거래는 사업자 간의 거래로 실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중고건설기계 양도자)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장부가액이 아닌 실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매출 신고하여야 함
  - (중고건설기계 양수자) 실거래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거래사실확인 신청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사례 5

중고플랫폼에서 고가의 중장비를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판매하거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VAT 탈루 사례



□ 사실관계 및 확인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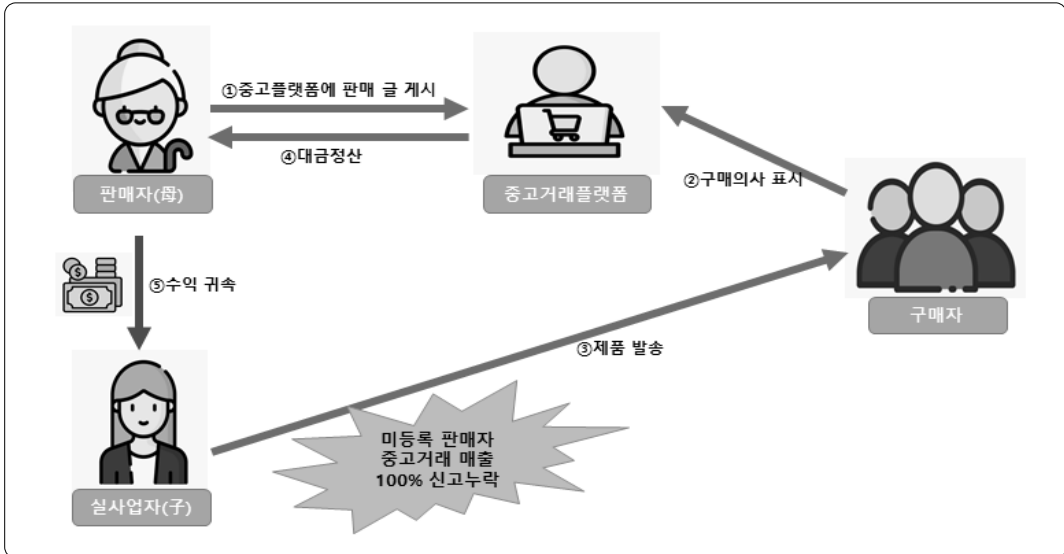
- 중장비 판매자 A는 중고플랫폼을 통해 판매 글을 게시하여 고가의 건설기계를 00건 판매하면서 00억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음
- 또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 구매자 B에게 C명의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였음에도,
  - 금융 증빙 미제출 등 사실관계에 대한 소명 불분명으로 세무조사

□ 올바른 신고 방법

- 중고플랫폼을 통한 계속·반복적 판매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있으며,
  - 명의개서가 필요한 건설기계는 관련 법률에 따라 자료수집하고 있으며, 건설기계 매매업자는 실제 매출내역에 따라 성실신고 하여야 함
  - ※ 자료상 C :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포탈 등)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

사례 6

고령의 모친을 중고플랫폼 판매자로 등록하고 명품시계·가방을 판매한 미등록 사업자의 VAT 탈루 사례



□ 사실관계 및 확인 결과

- 무직자 A는 고령의 모친명의로 중고플랫폼 판매자를 등록하여 명품시계·가방 등을 판매하였으나, 사업자 등록 없이 부가가치세 무신고
- 중고플랫폼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000여건, 000백만원을 판매하는 등 통상적인 중고거래가 아닌 사업성 높은 판매자로 분석되어 소명요청 하였고,
  - A가 실사업자로 확인되어 사업자 직권등록 및 명품 등의 판매대금에 대해 부가가치세 00백만원 추징

□ 올바른 신고 방법

- 플랫폼에서 통상적인 중고거래가 아닌 계속·반복적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영리 목적과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함
- 중고플랫폼에서 중고품을 반복적으로 재판매하는 미등록 사업자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 등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의무를 이행하고 실제 거래내역에 대하여 정확한 매출 신고를 하여야 함

## 참고 2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및 상담

### □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구 분	주 요 내 용
홈택스 (P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자: 모든 사업자</li> <li>○ 접근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회원 접속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 선택</li> <li>○ 이용시간: 7.1. ~ 7.25. 매일 06:00 ~ 다음날 01:00 ※ 다만, 7.10.(목), 7.25.(금)은 06:00 ~ 24:00 까지 운영</li> <li>○ 『세금비서 서비스 대상』: ①5종 서식*으로 신고를 완료하는 일반과세자 및 ②부동산임대업만 영위하는 사업자 중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와 5종 서식으로 신고를 완료하는 일반과세자, ③1개 업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 * 확정신고서, 매출·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수령명세서</li> </ul>
손택스 (모바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자: 모든 사업자</li> <li>○ 접근방법: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 ※ 회원 접속 → ‘전체메뉴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 선택</li> </ul>
A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자: 무실적 사업자</li> <li>○ 1544-9944 → 보이는ARS 또는 음성ARS → 부가가치세 신고 → 무실적신고</li> </ul>
우편·방문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시간: 2025. 7. 25.(금) 18:00까지</li> </ul>

### □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

구 분	주 요 내 용
홈택스 (PC) · 손택스 (모바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납부(공동·금융인증서 접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li> <li>-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자진납부’</li> </ul> </li> <li>○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li> <li>○ 납부시간: 07:00 ~ 23:30(연중 무휴)</li> </ul>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 금융결제원 사이트 납부(www.giro.or.kr, www.cardrotax.kr) ○ 납부시간: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 매일 (00:30~23:30, 07:00~23:30), 평일 (00:30~23:30, 09:00~23:30, 09:00~22:00)
금융기관	○ 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 ARS, 공과금수납기* * 금융기관에서 공과금 납부 전용을 위해 설치된 단말기 ○ 납부시간: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세무서 (무인수납 창구 등)	○ 무인수납창구* * 신용카드수납기로 납세자가 직접 이용

#### □ AI상담·맞춤형 안내를 통한 국세상담 편의 제고

- (AI상담) AI가 24시간 상담\*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등 문의는 직원이 상담  
\* '25.1기 부가세 확정신고 관련내용 상담 및 관련 참고자료 문자 전송

■ (국세상담센터) ☎126 → 0 상담사 연결 ⇄ 상담 대기인원 초과 시 AI상담사 연결

■ (세무서 대표번호) ☎세무서 대표번호 → 6 부가세 상담사 연결 ⇄ AI상담사 연결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관련 상담은 국세상담센터(126) 전문 상담사로 바로 연결

- (맞춤형 안내) '25.1기 부가세 확정 신고대상 여부 및 전자신고분 세금납부용 가상계좌 문자(SMS)전송 서비스 제공

■ (맞춤형 안내) 126·세무서 대표번호 → 주민등록번호 인증 → (1번) 7월 부가세 정기신고 대상 조회, (2번) 세금납부용 가상계좌 문자전송

■ (신고대상여부 조회) 사업장이 다수인 경우 매출액이 큰 사업장 2개 안내

⇒ 그 외 사업장은 납세자가 사업자번호 입력하여 조회

- (ARS 신고) 보이는 ARS(국세상담센터), 디지털 ARS(세무서 대표전화) 신고화면에서 AI상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

### 참고 3 미리채움 서비스 항목 및 제공일정

- 현금영수증(1일), 전자(세금)계산서(12일), 신용카드(15일) 등 미리채움 항목을 순차적으로 제공하니 제공일정을 확인 후 신고하시면 편리하고 작성 오류를 줄일

부가가치세 신고,  
국세청이 소상공인 어려움 극복을 지원합니다.

No	구분	제공 항목 (총 28종)	제공일정	비고
1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25. 7. 1.	
2		수출실적 내역 (수출신고번호, 선적일, 수출액, 환율)	25. 7. 10.	
3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명세 포함) 매출 합계	25. 7. 12.	
4		신용카드 매출	25. 7. 15.	
5		판매·결제대행자료	25. 7. 16.	
6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금액	25. 7. 15.	
7	매입	현금영수증 매입	25. 7. 1.	
8		화물운전자복지카드 매입	25. 7. 1.	
9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25. 7. 15.	
10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명세 포함) 매입 합계	25. 7. 12.	
11		수출 중소기업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세액	25. 7. 15.	
12		면세농산물등 매입가액(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25. 7. 15.	
13	공제	직전기 재고매입세액	25. 7. 1.	
14		재고납부세액	25. 7. 1.	
15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기공제세액	25. 7. 1.	
16		일반과세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25. 7. 1.	
17		일반과세자 예정고지세액	25. 7. 1.	
18		신용카드사를 통한 대리납부 관련 세액공제금액	25. 7. 11.	
19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신고서상 계산서 금액	25. 7. 12.	
20		철스크랩 등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	25. 7. 15.	
21	기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직전기 임차인 명세	25. 7. 1.	
22		음식·숙박업 직전기 사업장현황명세서	25. 7. 1.	
2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액	25. 7. 12.	
24		전자계산서 매출 합계, 거래처별 명세	25. 7. 12.	
25		전자계산서 매입 합계, 거래처별 명세	25. 7. 12.	
26		국고입금 예정세액 정보(세무대리인)	25. 7. 15.	
27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수취·전송 관련 가산세 내역	25. 7. 15.	
28		수정신고·경정청구시 당초 부가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	신고마감후	



## 참고 4 **홈택스 개선을 통한 납세자 신고편의 주요 개선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액 미리채움 제공
  - (개선내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액을 조회 후 입력하는 방식에서 신고서에 자동으로 채워주는 방식으로 개선
- 부동산임대업 월세 및 보증금이자 신고서 자동반영
  - (개선내용) 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월세 및 보증금이자 입력 시 신고서에 자동으로 반영

## 참고 5 **세정지원대상자 및 직권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 현황**

### □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 ① 직전년도 매출액 1,500억 원 이하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 ② 매출액 10억 원 이하 영세사업자
- ③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 (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
- ④ 혁신성장 기업,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반도체, 바이오, 환경 등)
- ⑤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 (개인) '24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 매출과표 5억 이상 + 관세청·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
  - (법인) '24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 관세청·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
- ⑥ 특별재난지역 사업자(포천시 이동면, 경남 산청군 등 8개 지역)
- ⑦ 위메프·티몬·인터파크·AK몰·알렛츠 피해사업자
- ⑧ 제주항공 여객기 피해자 및 유가족

### □ 직권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 및 안내

- ① 제조·건설업 및 음식·숙박·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법인 중소기업 포함)로서, '24.2기 귀속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
- ②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로서 '24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사업자
  - (개인) '24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 관세청·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
  - (법인) '24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중견기업 + 관세청·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
- ③ 간이과세자 예정부과대상 및 예정신고한 사업자 중 음식·숙박·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국세청이 소상공인 어려움 극복을 지원합니다.

- (안내방법) 직권 납기연장 대상 사업자에게 모바일 개별안내 및 홈택스 나의홈택스 메뉴에서 확인 가능

#### □ 납부기한연장 신청 방법

- (온라인)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여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 [홈택스] ① 증명·등록·신청 → ②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③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 /내역조회 → ④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 [손택스] ① 전체메뉴 → ②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③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④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 (우편·방문)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 제출

## 참고 6 사업용 신용카드 개요 및 등록·조회 방법 등

#### □ 개요

- (의의) 가사경비가 아닌 사업관련 경비를 지출용도로만 사용하기 위해 홈택스에 등록하는 신용카드
- (장점) ①홈택스에서 등록한 카드사용 내역 조회, ②부가가치세 신고 시 합계액만 기재하면 매입세액공제, ③사용내역이 전산구축되어 신고누락 우려 감소

#### □ 홈택스 등록 및 조회 방법

- (등록) 개인사업자는 홈택스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화면에서 등록\*  
\* 법인명의 카드는 전체가 사업용신용카드로서, 별도로 홈택스 등록절차 없음
- (조회) 카드사로부터 사용내역을 제공받아 전산구축하여 매월 중순경 조회 가능

접근  
경로

▶ (등록) 홈택스 → 계산서·영수증·카드 → 신용카드 매입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

(조회) 홈택스 → 계산서·영수증·카드 → 신용카드 매입 →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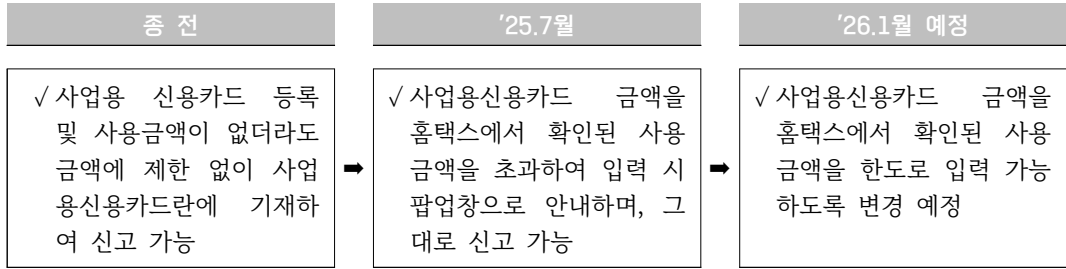
#### □ 사업용 신용카드 등 잘못 신고한 사례

- (유형 ①)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은 신용카드를 사업관련 지출에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등매출전표 수령명세서 작성 시 세부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나 총액만 기재
- (유형 ②)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은 신용카드를 사업관련 지출에 사용하였으나, 그 밖의 신용카드와 사업용신용카드에 중복기재하여 매입세액 과다공제

- (유형 ③) 사업용신용카드 또는 기타 신용카드로 가사관련 경비를 지출하였으나, 해당 지출을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부당하게 공제

□ 사업용 신용카드 등 신고방식 개선

- (개선 취지) 신용카드등수령명세서 작성 시 잘못 신고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사전에 실수를 차단하고 추후 납세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작성방식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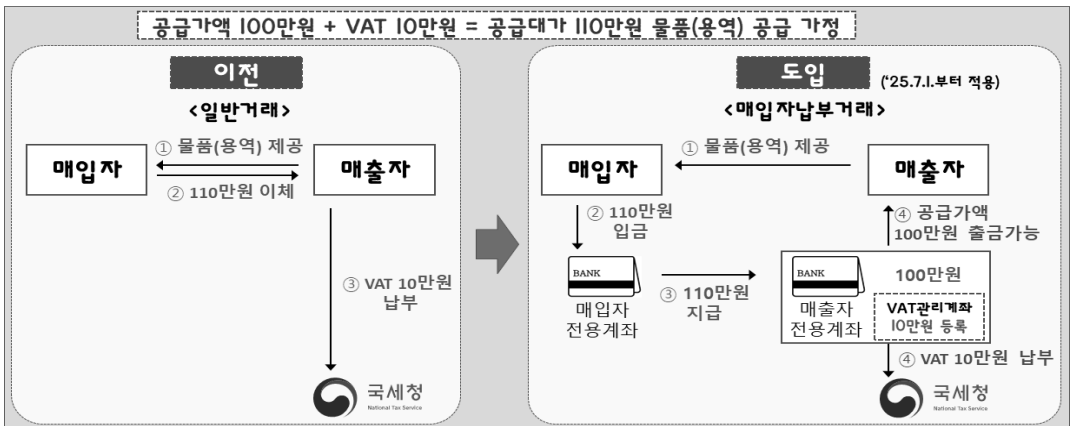


## 참고 7 7월부터 달라지는 부가가치세 제도 안내

□ 면세점 송객용역 매입자 납부특례 도입

- (제도 도입) 면세점송객용역(이하 송객용역)이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제도 적용 대상에 추가되어 '25.7.1.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 (매입자납부특례) 매입자가 거래대금을 매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지정은행\*의 매출자 전용계좌에 입금하면 공급가액은 매출자에게 지급되고, 부가가치세는 지정은행이 관리 후 직접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

\* (지정은행) 경남, 광주, 국민, 농협, 부산, 수협, 신한, 아이엠, 우리, 전북, 기업, 하나, 한국산업



- (유의사항) '25.7.1.이후 송객용역을 거래하는 면세점과 여행사는 반드시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거래 시 의무 사용(매출자·매입자 모두 대상)

- (미사용 시) 미사용가산세 부과(매출자·매입자) 및 매입세액불공제(매입자)

○ (문의·안내) 관련 업무가이드를 홈페이지에 게시\*

\* 국세청홈페이지 → 알림·소식 → 공지사항 → ‘면세점송객용역 매입자납부제도 안내’

□ 외국법인 등 판매·결제대행 자료제출 대상 확대

○ (제출 대상 확대) 과세자료 확보를 통한 세원 양성화를 위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업 마켓사업자에게 국내사업자의 판매·결제대행 자료 제출 의무\* 부여

\* 부가가치세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21조 개정

○ (제출기한) 거래일이 속하는 매 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

○ (적용시기) '25.7.1.이후 판매·결제를 대행·중개하는 분부터 적용

○ (제출내용)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국외사업자가 공급한 경우는 제외)과 관련하여 국내 사업자의 월별 거래 명세

###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7월 4일 (금)	7월 7일 (월)	7월 8일 (화)	7월 9일 (수)	7월 10일 (목)
미 달 러 (USD)	1358.10	1364.20	1366.60	1368.00	1373.80
일 본 엔 (JPY)	937.43	943.95	936.77	932.77	939.25
영 국 파 운 드 (GBP)	1854.55	1862.34	1861.04	1859.45	1866.86
캐 나 다 달 러 (CAD)	999.85	1002.72	999.78	1001.13	1003.69
홍 콩 달 러 (HKD)	173.07	173.79	174.09	174.27	175.01
위 안 화 (CNH)	189.69	190.55	190.67	190.61	191.21
유 로 화 (EUR)	1597.06	1607.10	1603.91	1604.19	1610.64
호 주 달 러 (AUD)	892.81	893.96	888.22	893.37	898.05
싱 가 폴 달 러 (SGD)	1065.18	1070.59	1068.45	1069.08	1073.37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321.63	323.19	322.69	322.57	323.21

# ‘25.6월 한국회계기준원 신속 질의회신 요약 등 공개

- 한국회계기준원, 2025. 7

-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은 기업회계기준의 일관되고 원활한 적용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질의회신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왔음
  - \*1) 금융위원회의 ‘질의회신 제도 개선 방안(‘20.5월)’의 일환
  - \*2) ❶ K-IFRS 제개정으로 질의회신 내용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경우, ❷ 법원·검찰청 사실조회 등에 해당하는 질의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
  
- 2025년 6월 30일, 질의회신 요약(16건)과 IFRS 해석위원회 논의결과(4건)를 한국회계기준원 홈페이지에 공개함\*
  - \* (붙임) ‘25.6월 질의회신 요약 등 공개 목록 참조
  - (질의회신) 한국회계기준원에서 2025년 상반기에 회신한 일반기업회계기준 정규 질의회신(1건), 2024년 하반기에 회신한 K-IFRS 신속 질의회신(8건), 일반기업회계기준(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신속 질의회신(7건)
    - 질의회신 요약에는 질의 내용, 회신, 관련 기준이 포함되어 있음
  - (IFRS IC 논의결과) IFRS 해석위원회가 2024년 11월~2025년 4월에 발표한 (Compilation of Agenda Decisions Volume 12) 특정 회계 이슈의 논의 결론 및 근거를 포함

## 붙임

### ‘25.6월 질의회신 요약 등 공개 목록

#### 1. 일반기업회계기준 정규 질의회신 공개 목록

질의회신 번호	회신일	질의회신 제목
2025-G-KQA001	2025.06.20.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회계처리

## 1. 질의·회신 요약

### 1. 질의현황

- 중소기업이 법인통합 방식으로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와 관련한 개인 소유자의 양도소득세가 사업용고정자산을 출자받은 법인으로 이월과세됨 (조특 §2①vi 및 §31①)
- 현물출자 후 5년이 경과하면 법인이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를 법인이 법인세로 납부하나(조특 §2①vi),
- 현물출자 후 5년 이내 출자받은 법인 또는 출자한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출자한 개인이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함(조특§31①vii)

- (1) 통합법인이 소멸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50% 이상 처분하는 경우 포함)
- (2) 현물출자한 개인이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 통합법인이 출자받은 사업용고정자산을 처분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법인세로 납부하는 경우, 법인통합시점에 확정된 양도소득세액을 처분일이 속하는 기간의 과세표준이 아닌 납부할 세액에 가산함(감면분추가납부세액)
- 통합법인은 현재 출자받은 사업용고정자산(토지)의 처분을 회피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미래에 회피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도 예상하지 아니함

### 2. 질의 요약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되는 경우, 사업용고정자산(토지)을 출자받은 법인이 관련 부채를 언제,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지?

### 3. 회신 요약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 사업용고정자산인 토지를 양도하여 이월과세금액의 납부를 회피할 수 없게 되면 부채를 인식하면서 비용을 인식함○ 그전까지는 해당 이월과세금액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문단 2.82(3)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추가 정보를 주석으로 공시함

### 판단근거

- (1)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 ‘법인세회계’ 문단 22.2에서는 해당 장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법인세를 법인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설명함. 따라서 법인세라는 명목으로 과세되더라도 기업의 과세소득과 무관하게 결정된다면 제22장을 적용하지 아니함



- (2)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이월과세제도로 현물출자자인 개인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자가 되는 경우, 그 자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에 따라 양도(이하, '양도')할 때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가 기업의 법인세로 과세되지만 기업의 과세소득과 관련되지 않은 세액이므로 해당 세금은 제22장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 (3)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문단 14.3에서는 충당부채를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에 의한 현재의무로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하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한 당해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의무'로 정의하고, '용어의 정의'에서는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 현재 의무의 이행을 회피할 수 없는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 정의하고 이를 발생시킨 과거사건을 의무발생사건이라고 정의함. 또 문단 실14.2에서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의무의 이행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을 때 법적의무가 발생한다고 설명함
- (4) 이에 따르면 법인통합시점에 질의의 토지를 양수하는 것 자체로는 충당부채를 인식해야 하는 의무발생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또 재무회계개념체계 문단 64에 따르면 계속기업 가정하에서는 청산이 요구되는 상황이 없다고 가정함. 따라서 계속기업 전제하에 의무의 회피 가능성을 판단할 때도 청산으로 인해 회피가 불가능하다는 점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함. 질의에서는 기업이 계속기업을 전제하고, 토지의 처분을 통제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므로 토지의 양도 때까지는 부담하는 현재의무가 없어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함
- (5) 이러한 충당부채 인식 여부에 대한 판단에 따르면 법인통합시점에 토지 양수를 우발부채의 정의에 포함된 과거사건으로 보기는 어려움
- (6) 이 경우, 중요성을 고려해서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문단2.82(3)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추가 정보를 주석으로 공시함
- (7) 이월과세액 납부는 주주와의 자본거래(예: 배당, 자본거래 비용 중 자본거래가 없었다면 회피가능하고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한 추가비용)로 볼 수 없고,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유형자산' 문단 10.14에서 규정하는 문단 10.5의 인식 기준을 충족하는 토지에 대한 후속적인 지출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부채를 인식한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함

## 2. K-IFRS 신속 질의회신 요약 공개 목록

순번	회신일	질의회신 제목
1	2024.07.18.	전환사채에 부여된 매도청구권의 유동성 분류

### [질의]

회사는 20X1년 초에 전환사채를 발행하였는데 해당 계약에는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과 전환권,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회사나 회사가 지정하는 제삼자가 전환사채의 전부나 일부를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이 포함됨

\* 전환사채 등과 독립적으로 제삼자 지정 가능 콜옵션을 양도할 수 있으므로 해당 콜옵션은 별도의 금융상품(파생상품자산)에 해당(제1109호 문단 4.3.1)

■ 사채의 만기: 20X3. 12. 31.(3년)

■ 전환권, 조기상환청구권, 매도청구권 행사 가능기간: 20X2. 1. 1. ~ 20X3. 12. 31.

회사는 20X1년 말 현재,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없으므로 사채와 전환권, 조기상환청구권을 유동부채로 분류함(1001.69)

회사가 매도청구권을 12개월 이내에 행사할 계획이 없는 경우, 매도청구권을 항상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 [회신]

□ 단기매매목적이 아닌 파생상품자산은, 만기가 12개월 이상이고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면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함(제1001호 문단 BC38J)

○ 전환사채 계약에 포함된 조기상환청구권과 전환권, 매도청구권은 하나의 권리가 행사되면 다른 권리는 소멸되는 관계이므로, 회사가 매도청구권을 12개월 이내에 행사할 계획이 없더라도 조기상환청구권과 전환권의 행사 가능성이 매도청구권의 유동·비유동 분류에 영향을 미침

- 사채권자가 보유한 조기상환청구권과 전환권이 12개월 이내에 행사될 것으로 예상되면, 발행자의 매도청구권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보아 유동자산으로 분류함(제1001호 문단 66(3))

- 반면, 회사가 매도청구권을 12개월 이내에 행사할 계획이 없고 조기상환청구권과 전환권도 12개월 이내에 행사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 매도청구권을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함

순번	회신일	질의회신 제목
2	2024.09.27.	연결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의 차입원가 자본화 대상 차입금

[질의]

지배기업 A와 종속기업 B, C는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서 각각 CU200, CU100, CU50을 차입하였음. 당기 중 C사는 적격자산을 취득하여 지출이 발생함

A사의 연결재무제표에서 C사의 적격자산 취득 관련 차입원가 자본화이자율 산정에 포함할 차입금은 얼마인지?

(1안) CU350(A사, B사, C사의 일반차입금)

(2안) CU50(C사의 일반차입금)

[회신]

□ 연결재무제표에서 자본화 이자율을 산정할 때에는 ① 연결실체(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자본화 이자율을 사용할지 아니면 ② 개별 종속기업의 자본화이자율을 사용할지를 판단한 후에, 적격자산 취득을 위한 특정차입금을 제외한 모든 차입금을 포함하여 자본화이자율을 산정함(제1023호 문단 14, BC14C, BC14E)

○ ① 연결실체 기준이 적절한지 ② 개별 종속기업 기준이 적절한지는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함(제1023호 문단 11, 15)

□ 만약, 지배기업이 연결실체 차원에서 자금 조달을 통합 관리하는 경우라면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모든 일반차입금을 포함하여 차입원가 자본화이자율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함(1안: CU350)

○ 반면, 연결실체 내 각 기업이 자금을 독립적으로 조달하는 경우라면 종속기업 C의 모든 일반차입금을 포함하여 차입원가 자본화이자율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함(2안: CU50)

순번	회신일	질의회신 제목
3	2024.11.06.	계속영업부문과 중단영업부문의 내부거래 채권·채무 제거 여부

[질의]

연결실체는 계속영업부문과 매각 예정의 단일 종속기업인 중단영업부문으로 구성되는데 해당 중단영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는 연결재무상태표에서 매각예정으로 분류됨 이 경우, 계속영업부문과 중단영업부문의 내부거래로 생긴 채권·채무를 연결재무상태표에

서 제거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 채권·채무를 제거해도 중단영업부문 매각시점에 계속영업부문이 보유한 해당 채권·채무가 인식되므로 내부거래 제거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회신]

- 연결재무상태표에서 계속영업부문과 중단영업부문 간 내부거래로 생긴 채권·채무는 제거해야 함
  - 연결실체 내 내부거래를 제거하지 않으면 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문단 B86의 제거 요구사항과 불일치하게 되고, K-IFRS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이나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에서 규정한 표시 관련 요구사항은 이보다 우선할 수 없음(IFRS 해석위원회, 2016.01.)
- K-IFRS 제1105호 문단 30에 따라 재무제표이용자가 중단영업과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 처분의 재무효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주석에 공시해야 함(제1105호 문단 30)

순번	회신일	질의회신 제목
4	2024.11.12.	현금흐름표에서 사업결합 시 용역수수료의 분류

[질의]

회사는 사업결합 시 이전대가를 산정하기 위해 외부평가기관을 통해 가치평가를 수행하였고, 그 용역수수료를 당기비용으로 인식함  
이 경우, 해당 용역수수료에 대한 현금흐름을 영업활동으로 분류하는지, 아니면 투자활동으로 분류하는지?

[회신]

- 사업결합 시 관련 용역수수료는 K-IFRS 제1103호 문단 53에 따라, 당기비용으로 인식한다면 영업활동현금흐름으로 분류함
  - 종속기업과 기타 사업에 대한 지배력의 획득 또는 상실에 따른 총현금흐름은 투자활동으로 분류하나(제1007호 문단 39), 자산으로 인식되는 지출만이 투자활동으로 분류되기에 적합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제1007호 문단 16)
  - 사업결합 시 당기비용으로 인식한 해당 용역수수료는, 이전대가를 구성하지 않고 자산으로도 인식되지 않으므로 투자활동으로 분류할 수 없음



순번	회신일	질의회신 제목
5	2024.11.29.	정부보조금 수령 시 원가기준 투입법의 진행률 산정

## [질의]

회사는 용역 제공에 드는 인건비에 대해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아 그 인건비가 비용으로 인식되는 기간에 해당 비용에서 정부보조금을 차감하는 회계처리를 함  
이러한 상황에서 인건비를 포함한 원가기준 투입법이 회사의 수행 정도를 잘 나타내는 경우, 진행률 산정에 반영하는 원가는 정부보조금 차감 전 금액인지, 차감 후 금액인지?

## [회신]

- 진행률을 측정하는 목적은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이전(기업의 수행의무 이행)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수행 정도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며(제1115호 문단 39)
  - 투입법은 수행의무의 이행에 예상되는 총 투입물 대비 수행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이나 투입물(예: 사용한 노동시간, 발생원가)에 기초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임(제1115호 문단 B18)
- 수행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이나 투입물은 정부보조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결정될 것임
  - 따라서 기업의 수행 정도를 나타내는 투입물이 발생원가인 경우, 정부보조금을 차감하지 않은 발생원가를 기준으로 진행률을 산정함

순번	회신일	질의회신 제목
6	2024.12.18.	연결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주식선택권의 표시

## [질의]

종속기업이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을 종속기업의 임직원에게 부여하고, 가득기간 중 주식선택권을 자본으로 표시하였음  
해당 주식선택권은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지배지분과 비지배지분에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

## [회신]

- 종속기업의 임직원이 가득 중인 주식선택권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주식선택권은 지배기업에 직접이나 간접으로 귀속되지 아니하므로 전액 비지배지분으로 분류함(제1110호 용어의 정의)

- 다만, 관련하여 발생하는 주식보상비용은 종속기업의 다른 손익과 동일한 비율로 지배지분과 비지배지분에 각각 배분함(제1110호 문단 B94)

순번	회신일	질의회신 제목
7	2024.12.18.	연결재무제표에서 지배기업이 인수하지 않은 전환사채 전환권의 표시

[질의]

지배기업과 그 연결실체는 종속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하지 않았음  
이 경우, 자본으로 분류되는 전환권을 전환사채 발행시점에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지배지분과 비지배지분으로 어떻게 분류해야 하는지?

[회신]

- 전환사채 발행시점에 지배기업이 인수하지 않은 전환사채의 전환권은 지배기업에 직접이나 간접으로 귀속되지 아니하므로 전액 비지배지분으로 분류함(제1110호 용어의 정의)

순번	회신일	질의회신 제목
8	2024.12.19.	보통주를 상환전환우선주로 변경하는 경우, 발행자의 회계처리

[질의]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로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발행된 보통주 일부를 상환전환우선주로 변경함(이 변경은 법적으로 유효한 변경임). 변경된 상환전환우선주는 K-IFRS 제1032호에 따라 전체를 금융부채로 분류함  
조건 변경에 따라 기존 지분상품이 금융부채로 재분류되는 경우의 회계처리는?

[회신]

- 계약조건을 변경으로 지분상품(보통주)이 금융부채(상환전환우선주)로 재분류되는 경우,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한 후 소각하는 것으로 보아 보통주를 제거하고(제1032호 문단 33), 상환전환우선주는 최초 인식 시 공정가치로 측정함(제1109호 문단 5.1.1)
- 재취득한 자기지분상품을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보통주의 장부금액과 상환전환우선주의 공정가치와의 차이는 자본으로 인식함(제1032호 문단 33)

### 3. 일반기업회계기준 신속 질의회신 요약 공개 목록

순번	회신일	질의회신 제목
1	2024.03.05.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중소기업 특례 적용 가능 여부

#### 1. 질의요약

중소기업기본법에는 중소기업의 범위 유예기간이 존재하여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연도부터 일정 기간은 중소기업으로 인정됨  
이 유예기간 중에도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 2. 회신요약

-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유예기간 포함)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 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 해당 특례에서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기 때문임 (제31장 문단 31.2)

순번	회신일	질의회신 제목
2	2024.09.11.	중소기업 여부 변경 시 비교재무제표를 재작성해야 하는지

#### 1. 질의요약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하였다가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이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당기 재무제표에는 이 특례를 적용하려고 함  
이 경우, 비교표시되는 전기 재무제표를 소급하여 재작성해야 하는지?

#### 2. 회신요약

- 질의의 상황은 동일한 유형의 사건이나 거래에 적용하던 회계기준과 그 적용방법을 바꾸는 것으로(제5장 문단 5.7, 실5.3) 회계정책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함
  - 따라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비교표시 전기 재무제표도 소급적용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작성해야 함(제5장 문단 5.11)
  - 다만,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누적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계정책의 변경을 전진적으로 처리하여 그 효과가 당기와 당기 이후의 기간에 반영되도록 함(제5장 문단 5.12)

순번	회신일	질의회신 제목
3	2024.10.14.	중소기업 특례 지분법 면제 규정의 투자자산별 적용 가능 여부

### 1. 질의요약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문단 31.6 지분법 면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관계기업 투자자산 A, B 중 투자자산 A에만 해당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 2. 회신요약

- 회사가 관계기업에 지분법 면제 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모든 관계기업 투자자산에 일관되게 적용해야 함
  -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일단 채택한 회계정책은 유사한 종류의 사건이나 거래의 회계처리에 그대로 적용해야 하기 때문임(제5장 문단 5.8)

순번	회신일	질의회신 제목
4	2025.03.11.	중소기업 특례 규정의 문단별 적용 중단

### 1. 질의요약

회사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중 지분법 면제, 이연법인세 면제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이 경우, 지분법 면제 규정만 선택적으로 적용을 중단하고 이연법인세 면제 규정은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 2. 회신요약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의 일부 문단만 선택적으로 중단하는 것도 가능함(제31장 문단 31.17)
  -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향상할 수 있는 경우에 회계정책 변경이 허용되고(제31장 문단 5.9(2)),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는 문단별로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임(제31장 문단 결31.2)

순번	회신일	질의회신 제목
5	2025.03.13.	중소기업 특례 재적용 시, 과거 미적용 항목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1. 질의요약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의 이연법인세·지분법 면제 규정을 적용하였다가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이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이 특례를 다시 적용하려고 함

이 경우, 파생상품 관련 특례도 적용할 수 있는지? (과거에도 파생상품 거래는 있었으나 특례를 적용하지 않았음)

2. 회신요약

□ 회사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었다가 다시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중소기업 특례를 새로이 적용할 수 있음(제31장 문단 결31.1)

- 과거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하지 않았던 항목에도 해당 특례의 규정을 새롭게 적용할 수 있음

순번	회신일	질의회신 제목
6	2025.03.14.	중소기업이 된 회계연도에 특례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다음 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는지

1. 질의요약

회사는 20X2년부터 중소기업에 포함되었으나,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함

이러한 경우, 20X3년부터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2. 회신요약

□ 회사가 중소기업이 된 20X2년에 중소기업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항목이 있었음에도 적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특례 규정을 20X3년에 새로 적용할 수는 없음

- 다만, 20X2년에 없었던 새로운 사건이나 거래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건이나 거래에는 특례사항을 적용할 수 있음(제31장 문단 결31.2)

순번	회신일	질의회신 제목
7	2025.04.28.	할부매출에 대응되는 원가의 인식시기

### 1. 질의요약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문단 31.9를 적용하면 1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할부매출은 할부금회수기일이 도래한 날에 실현되는 것으로 할 수 있음

이 경우, 수익에 대응되는 원가는 언제 인식하는지? (할부금회수기일에 대금이 정상적으로 회수된다고 전제함)

### 2. 회신요약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에서 할부매출 원가의 인식시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문단 5.4~5.6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할 수 있음

- 장기 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이익을 할부금회수기일이 도래한 날에 실현되는 것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문단(제31장 문단 31.11)도 참고하여 수익 인식시점에 대응되는 원가를 인식할 수 있음

### [관련 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31.9 1년 내의 기간에 완료되는 용역매출 및 건설형 공사계약에 대하여는 용역제공을 완료하였거나 공사 등을 완성한 날에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1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할부매출은 할부금회수기일이 도래한 날에 실현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31.11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장기 할부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처분이익을 할부금회수기일이 도래한 날에 실현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5.4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이 없는 경우, 경영진은 판단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 및 적용하여 회계정보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 때 회계정보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모두 보유하여야 한다.

- (1)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 요구에 목적적합하다.
- (2) 신뢰할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는 다음의 속성을 포함한다.
  - (가)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충실하게 표현한다.

- (나) 거래, 기타 사건 및 상황의 단순한 법적 형태가 아닌 경제적 실질을 반영한다.
- (다) 중립적이다. 즉, 편이가 없다
- (라) 신중하게 고려한다.
- (마) 중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고려한다.

5.5 문단 5.4의 판단을 하는 경우, 경영진은 다음 사항을 순차적으로 참조하여 그 적용 가능성을 고려한다.

- (1) 내용상 유사하고 관련되는 회계논제를 다루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규정
- (2) 자산, 부채, 수익, 비용에 대한 ‘재무회계개념체계’의 정의, 인식기준 및 측정 개념
- (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5.6 문단 5.5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회계정책을 정하지 못하는 경우, 경영진은 유사한 개념체계를 사용하여 회계기준을 개발하는 회계기준제정기구가 가장 최근에 발표한 회계기준, 기타의 회계문헌과 인정된 산업관행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고려사항은 문단 5.5에서 기술한 고려사항의 내용과 상충되지 않아야 한다.

#### 재무회계개념체계

146. 경제적 효익의 사용은 다음과 같이 비용으로 인식된다.

- (가) 수익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인식할 때 대응하여 인식한다. 이와 같은 예로는 매출수익에 대응하여 인식하는 매출원가를 들 수 있다. ...(후략)...

### 4. IFRS 해석위원회 논의결과 공개 목록

순번	IFRS IC 논의결과 제목
1	시장가치에 따라 담보가 조정되는 계약에서의 변동증거금과 관련되는 현금흐름의 분류 (IAS 7 ‘현금흐름표’)

#### 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사전에 정해진 가격으로 미래 특정 시점에 일반상품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변동증거금의 지급액과 관련되는 현금흐름을 현금흐름표에 어떻게 표시하는지에 대한 요청서를 받았다.

## 실제 사례

요청서에서는 사전에 정해진 가격으로 미래 특정 시점에 일반상품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을 기술한다. 이러한 계약은 다양한 목적으로 체결될 수 있고, 이에 따라 IFRS 기준서의 관련되는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이러한 계약을 사용할 수 있다.

- a. 예상되는 사용 요구에 따라 일반상품을 수령함
- b. 일반상품의 가격 변동 위험을 회피함
- c. 일반상품을 매매함

이러한 계약은 일반적으로 만기가 최대 3년이고, 실물 인도나 차액 현금결제 방식으로 청산될 수 있다. 그리고 다음 두 가지 특성을 모두 가진다.

- a.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됨 — 즉,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후, 중앙청산소를 통해 청산하기 위해 각 계약당사자는 중앙청산소에 계약을 이관한다.
- b. 시장가치에 따라 담보가 조정됨 — 즉, 계약당사자들은 계약 기간에 공정가치의 변동에 기초한 변동증거금을 매일 지급하거나 수취한다. 이러한 변동증거금 지급은 (시장가치로 결제되는 계약과 같이) 계약의 일부를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 담보를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계약은 시장가치에 따라 담보가 조정된다.

요청서에서는 이러한 계약에서 발생하는 변동증거금 지급액과 관련되는 현금흐름을 현금흐름표에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 질문하였다.

## 2. 검토 내용과 결정

### 결론

해석위원회가 수집한 증거에 따르면, 요청서에서 기술한 사항이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해석위원회는 이러한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요청서에서 기술한 사안이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회계기준 제정·개정 과제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순번	IFRS IC 논의결과 제목
2	다른 기업의 의무에 대해 발행한 보증 (IFRS 9 '금융상품')

### 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발행한 보증을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에 대한 요청서를 받았다.

요청서에서는 기업의 별도재무제표상 세 가지 사실관계를 기술하였다. 이 사실관계에서는 기업이 공동기업의 의무에 대한 여러 유형의 계약상 보증을 발행한다. 이 사실관계에는



공동기업이 용역 계약이나 파트너십 계약에 따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은행, 고객, 다른 제삼자에게 지급을 보증하는 상황이 포함된다.

요청서에서는 발행된 보증이 IFRS 9 '금융상품'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금융보증계약인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러한 보증에 적용되는 다른 IFRS 회계기준서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해석위원회가 수집한 증거에 따르면, 기업들은 실무에서 공동기업 및 다른 기업(예: 관계기업, 종속기업, 제삼자)의 의무에 대해 보증을 발행하고, 이러한 보증에는 다양한 조건이 있다. 해석위원회는 발행된 보증의 회계처리에 관한 질문이 기업의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 모두에서 생긴다고 보았다.

## 2. 검토 내용과 결정

발행된 보증에 적용되는 IFRS 회계기준서는 무엇인가?

보증의 조건 분석

보증은 여러 방식으로 생기거나 발행될 수 있고, 영향을 받는 당사자에게 다양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한다. IFRS 회계기준서에서는 '보증'을 정의하지 않고, 모든 보증에 적용되는 단일 회계기준서도 존재하지 않는다.

기업이 발행한 보증을 회계처리할 때에는 사업 활동의 성격이 아니라 IFRS 회계기준서의 요구사항(적용범위 요구사항 포함)을 기초로 한다. 기업은 발행한 보증에 어떤 IFRS 회계기준서를 적용할지 판단한다. 이러한 판단을 할 때, 조건에 실질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증의 모든 조건(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을 분석해야 한다.

보증이 금융보증계약인가?

IFRS 9 '금융상품', IFRS 17 '보험계약', IFRS 1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IAS 37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의 적용범위 요구사항에 기초하여 발행한 보증이 '금융보증계약'인지를 먼저 고려한다. '금융보증계약'은 IFRS 9에서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으로 정의한다. 금융보증계약의 정의에 있는 '채무상품'이라는 용어가 IFRS 회계기준서에서 정의되지 않았다. 해석위원회는 '채무상품'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대한 해석에 실무적 다양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IFRS 9 문단 2.1(e)(iii)와 IFRS 17 문단 7(e)에서는 금융보증계약이 IFRS 9(및 IAS 32 '금융상품: 표시'와 IFRS 7 '금융상품: 공시')의 적용범위에 포함된다고 기술한다. 다만, 한 가지 예외가 있다. 발행자가 금융보증계약을 보험계약으로 본다는 것을 사전에 명백히 하고 보험계약에 적용할 수 있는 회계처리를 하였다면, 발행자는 IFRS 9(및 IAS 32와 IFRS 7)나 IFRS 17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IFRS 9 문단 2.1(e)(iii)에서는 '

발행자는 각 계약별로 회계처리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나 선택한 후에는 변경할 수 없다고 기술한다.

### 보증이 보험계약인가?

발행한 보증이 금융보증계약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 경우, 해당 보증이 IFRS 17에서 정의하는 '보험계약'인지를 고려한다. IFRS 17은 발행 기업의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보험계약에 적용된다.

IFRS 17에서는 '보험계약'을 '계약당사자 일방(계약발행자)이 특정한 미래의 불확실한 사건(보험사건)으로 계약상대방(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영향이 발생한 경우에 보험계약자에게 보상하기로 약정함으로써 보험계약자로부터 유의적 보험위험을 인수하는 계약'으로 정의한다. IFRS 17에서는 '보험위험'을 '계약의 보유자로부터 계약발행자에게 이전되는 위험으로서 금융위험 이외의 위험'으로 정의한다. '보험계약'과 '유의적 보험위험'의 정의에 대한 추가 적용지침은 IFRS 17 문단 B2-B30에 있다.

또 다음을 포함한 IFRS 17 문단 3-13의 적용범위 요구사항을 고려한다.

- a. IFRS 17 문단 7: 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항목을 IFRS 17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
- b. IFRS 17 문단 8-8A: 그 문단에서 기술하는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하는 계약에 IFRS 17 적용을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적용할 수 있는 IFRS 회계기준서의 다른 요구사항

발행한 보증이 금융보증계약도 아니고 보험계약도 아니라고 결론 내린 경우, 보증을 어떻게 회계처리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IFRS 회계기준서의 다른 요구사항을 고려한다. 이 요구사항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a. IFRS 9: 보증이 대출약정(IFRS 9 문단 2.3 참조)이거나 파생상품(IFRS 9 부록 A에서 정의함)이거나 IAS 32에서 정의하는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 b. IFRS 15: 보증의 거래상대방이 고객인 경우와 보증이 다른 IFRS 회계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IFRS 15 문단 5-8).
- c. IAS 37: 보증이 다른 IFRS 회계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총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을 생기게 하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IAS 37 문단 5).

### 결론

해석위원회는 기업이 발행한 보증을 회계처리할 때에는 사업 활동의 성격이 아니라 IFRS 회계기준서의 요구사항(적용범위 요구사항 포함)을 기초로 한다고 보았다. 기업은 발행한 보증에 어떤 IFRS 회계기준서가 적용되는지를 결정할 때, 그리고 보증계약의 구체적인

사실과 상황 및 조건을 고려할 때 판단을 한다.

해석위원회는 2024년 4월 IASB 회의에서 금융보증계약 정의에 포함된 '채무상품' 용어의 해석의 실무적 다양성을 논의한 것에 주목하였다. IASB는 다음 안건결정 협의(agenda consultation)에서 금융보증계약 정의의 '채무상품' 용어에 대한 의미를 포함한 금융보증계약과 관련된 광범위한 적용 문제를 고려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므로 해석위원회는 보증을 금융보증계약으로 회계처리할지를 결정할 때 '채무상품'이라는 용어의 의미 해석에 기업이 판단을 한다고 결론 내렸다.

IFRS 회계기준서의 적용범위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해석위원회는 IFRS 회계기준서의 원칙과 요구사항이 발행한 보증의 회계처리를 결정하는데 적절한 근거를 제공한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회계기준 제정·개정 과제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순번	IFRS IC 논의결과 제목
3	수업료 수익의 인식 (IFRS 1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교육기관이 수업료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대한 요청서를 받았다.

#### 사실관계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 a. 학생들은 연중 약 10개월(학년도) 동안 교육기관에 출석하고 약 2개월의 여름방학이 있다.
- b. 교육기관의 학사직원들은 여름방학 동안 4주간의 휴가를 보내고 나머지 기간은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 i. 지난 학년도 마무리(예: 시험 채점과 증명서 발급)
  - ii. 다음 학년도 준비(예: 전 학년도 낙제생들을 위한 재시험 관리, 시간표 및 교육자료 개발)
- c. 학사직원들의 4주 휴가 기간 동안
  - i. 학사직원들은 교육기관에 계속 고용되어 급여를 받지만, 수업을 하지 않고 교육 서비스 제공과 관련되는 다른 활동도 수행하지 않는다
  - ii. 교육기관의 비학사직원들은 일부 행정 지원업무를 한다(예: 이메일 문의와 과거 기록 요청에 대한 응답).
  - iii. 교육기관은 IT 서비스와 청소와 같은 서비스를 계속 받으며 대가를 지급한다.

IFRS 15를 적용하여, 교육기관은 수업료 수익을 기간에 걸쳐 인식한다. 요청서에서는 교육기관이 그 수익을 학년도(10개월)에 걸쳐 균등하게 인식해야 하는지, 연차 보고기간(12개월)에 걸쳐 균등하게 인식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기간에 걸쳐 인식해야 하는지를 질의하였다.

## 2. 조사 결과와 결론

해석위원회가 수집한 증거에 따르면 수업료 수익의 회계처리에 다양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 증거에 따르면 이러한 교육기관들이 수업료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의 차이가 있다면 이는 사실과 상황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수업료 수익 회계처리에 다양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해석위원회는 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요청서에 기술된 사항이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회계기준 제정·개정 과제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순번	IFRS IC 논의결과 제목
4	기후 관련 지출에서 생기는 무형자산 인식 (IAS 38 '무형자산')

### 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기업의 탄소배출권 취득과 연구개발활동 지출이 IAS 38에서 요구하는 무형자산 인식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요청서를 받았다.

#### 사실관계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a. 기업은 2020년과 2021년에, 2030년까지 자사의 탄소 배출량 중 일정 비율을 감축하겠다고 제삼자에게 선언(이하 '2030 선언'이라 한다)하였다.
- b. 기업은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s)'를 하였고, 자사의 2030 선언을 달성하기 위한 실무관행을 확립하였다고(established pattern of practice) 판단하였다. 이러한 적극적 조치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i) 전환계획 수립
  - (ii) 넷제로를 지향하는 투자자와의 협업
  - (iii) 자사 홈페이지에 선언과 계획 발표
  - (iv) 탄소 배출량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는 연합(coalitions)에 가입
  - (v)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를 재무제표와 투자자 등에게 제공하는 설명자료에 기재
  - (vi) 탄소배출권 구매와 2030 선언을 충족할 탄소 배출량 감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 ‘혁신 프로그램’ 투자에 자본 배분

- c. 기업의 혁신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해당 기업 또는 산업 특유의 탄소 배출량 감축 방안을 창안 및 개발하기 위해 노하우, 전문 지식, 그 밖의 지적재산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팀을 꾸리는 것과 관련되며, 이는 지적 자본을 창출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 d. 기업의 투자자, 보험사, 은행은 해당 기업이 한 조치에 기반하여 자체적인 전환 선언을 하였다.
- e. 기업은 자사의 2030 선언과 이에 따른 적극적 조치가 IAS 37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을 적용하는 의제 또는 법적 의무를 생기게 하였다고 결론지었다.

## 2. 검토 내용과 결정

2024년 4월 안건 결정 ‘기후 관련 선언 (IAS 37)’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기업에 의제 또는 법적 의무가 있는 경우, 해당 의무 이행원가에 대한 충당부채 인식 여부를 결정할 때 IAS 37 문단 14의 기준을 고려한다. 해석위원회는 기업이 자산 또는 비용의 인식 여부도 별도로 평가한다고 보았다.

이 요청서는 2024년 연차보고기간 기업의 탄소배출권 취득과 연구개발활동 지출이 사실 관계에서 기술된 혁신 프로그램에서 지적 자본을 창출하는 경우, 그 지출이 IAS 38의 무형자산 인식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를 질의한 것이다.

### 추가 배경

IASB는 경우에 따라 탄소배출권 사용을 포함하기도 하는 오염물질 가격결정 메커니즘 (pollutant pricing mechanisms, PPMs)이 얼마나 보편적이고 유의적인지에 대해 연구하고, 이해관계자들과 논의해 왔다. PPMs에 대한 프로젝트는 현재 보류(reserve list) 상태이나, IASB는 다음 안건선정 협의 시 PPMs 회계처리에 관한 프로젝트를 과제계획에 추가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탄소배출권 취득에 대한 회계처리 질문을 PPMs에 대한 IASB의 연구와 구별되는 별개 사안으로 고려하지는 않았다. 그 대신에 연구개발활동 지출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질문만을 고려하였다.

### 조사 결과와 결론

해석위원회가 수집한 증거는 연구개발활동 지출의 회계처리에 중요한 실무적 다양성이 없음을 나타냈다. 해석위원회는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요청서에 기술된 문제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안건을 회계기준 제정·개정 과제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